

	안산대학교창업보육센터(ABI)규정	규정번호	3-7-9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16.09.01.
		개정차수	4차
		소관부서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센터는 안산대학교 부설 창업보육센터라 칭한다.(이하 “센터”라 한다) 센터는 자생력이 부족한 신기술 창업자에게 각종 행·재정적, 기술적,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실하고 독립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산업구조의 기술 및 지식 집약화와 선진경제 실현을 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업무 및 기능) 센터는 제2조의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자(입주업체)의 선정, 입주, 관리, 평가,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2. 벤처기술의 창업촉진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3. 입주업체를 위한 시설, 기자재, 비품 등의 각종 편의 제공
4. 교육, 정보, 세미나, 기술 자문, 경영 자문, 법률 자문 등의 지원
5.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 알선, 투자 유치, 직접 투자 등 재정적 지원
6. 관리운영비, 수익금 및 스톡옵션의 관리
7. 안산대학교 창업동아리의 육성, 교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신기술 창업 활동 지원
8. 기타 입주업체 육성 및 창업지원에 관련된 각종 사업 및 외부 기관 연계 사업

제3조(연구실 및 보육시설 제공)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는 각종 연구실 및 창업보육 시설을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창업지원실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요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보육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재결에 의하여 별도 조직을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안산대학교 (이하 “대학”이라 한다) 총장이 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관하여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실) ① 창업지원실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경영지원, 센터의 관리운영 및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② 창업지원실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 전담직원(창업보육전문매니저)을 둔다.

③ 기술지원과 경영지원은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 경영, 디자인, 정보, 행·재정 기타 실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업체별 전담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창업보육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학 교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중 센터장의 추천으로 대학 총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주업체 모집 및 선정, 졸업 및 퇴출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주업체 지원방안 및 필요 기자재의 도입 심의
4. 센터의 제규정, 입주 계약서 내용의 제정 및 개정
5. 센터운영 및 창업보육사업 추진상 필요한 사항
6. 입주업체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⑦ 정기회의는 매 분기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⑧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거나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센터의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업체의 제반 기술, 운영 계획 및 업체 기밀 등의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재무회계

제9조(사업연도) 센터의 사업연도는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대학 지원금, 관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재원의 관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결재권자는 담당자, 센터장, 산학 협력단장으로 제한한다. 다만, 결재권자의 부재 시는 부재사유를 명시하고 상위결제를 득한다.

제12조(스톡옵션의 관리) ① 센터는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결재에 의하여 스톡옵션 행사권을 타인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 한도는 50% 이하로 하되, 양수인의 범위는 안산대학교, 센터 근무자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업체에 이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 근무자(센터장 및 전담 직원)에게는 사전 계약에 의하여 근무 수당, 퇴직 수당,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센터가 졸업업체로부터 공여 받은 스톡옵션 중의 일정 비율을 배정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및 결산) 센터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2월 전에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 보고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대학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규정개정 등) 이 규정의 개정,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여비) ① 센터의 여비규정은 대학 여비지급규정에 따른다.

② 여비의 지급구분은 대학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고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다.